

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3월 11일

상주시의회 의장 안 경



상주시 의회 규칙 제39호

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

제5조제2항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 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· 6. (생 략)	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장의</u> <u>전국적 협의체 또는 지역협의</u> <u>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</u> <u>하는 경우</u> 6. · 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제5조(심사위원회 심사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<u>제4호</u> 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5조(심사위원회 심사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제5호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